

# 서면 답변서

질의위원	김완규 위원	소 속	평창군의회
답 변 자	평 창 군 수 (자치행정과장)	일 자	질의: 2001. 12. 3 답변: 2001. 12. 4, 10:00
소 속	제91회 평창군의회(정례회) 행정사무감사(감사활동 1일차)		

## 【질의요지】

- 2000. 2001년도 인구증가노력과 감소방지 대책에 관한 감사 과정에서 질의하신 내용은
- 평창군의 주민등록 말소자 현황 및
  - 주민등록 말소자의 재등록 시 과태료 부과기준과 감면규정은 무엇입니까?

## 【답 변】

읍·면별 말소자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.

(2001. 12. 3 현재)

읍 면 별	말소자 현황		비고
	세대수	인원수	
계	467	516	
평 창 읍	87	110	
미 탄 면	29	29	
방 립 면	20	21	
대 화 면	66	68	
봉 평 면	11	11	
용 평 면	18	26	
진 부 면	132	141	
도 암 면	104	110	

□ 주민등록 말소자 재등록 시 과태료 감면규정 및 우리 군 부과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.

○ 주민등록 과태료 감면규정

- 주민등록법시행규칙제19조③항에 의거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과태료 처분 대상자의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를 참작하여 과태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까지 경감하여 부과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.
- 이에 의거 주민등록 일제정리 기간 중 재등록하는 자에 한해 과태료의 1/2을 경감하여 부과
- 우리 군의 2001년 재등록 과태료 부과 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.

읍 면 별	과태료부과		비고
	건수	금액(천원)	
계	60	2,775	50% 경감 부과한 금액임
평 창 읍	30	1,260	
미 탄 면	-	-	
방 립 면	1	50	
대 화 면	5	220	
봉 평 면	-	-	
용 평 면	-	-	
진 부 면	13	660	
도 암 면	11	585	

□ 주민등록 말소자 제등록 시 과태료 부과기준(대상 및 금액)은 다음과 같습니다.

○ 주민등록 과태료 부과대상 및 금액

(1) 과태료 부과대상

부 과 대 상 자	부과근거	금 액
사실조사를 정당한 사유없이 거부 또는 기피한 자	주민등록법 제21조의4①	50만원 이하
최고를 받은 자 또는 공고된 자중 정당한 사유없이 기간내 신고 또는 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	동법 제21조의4②	10만원 이하
신고(신청)를 정당한 사유없이 기간내 하지 아니한 자	동법 제21조의4③	5만원 이하

(2) 과태료 부과금액 (규칙 제19조, '99. 7. 24 개정)

(가) 최고 또는 공고된 자

- 신고(신청)기간 경과후 7일 이내 : 1만원
- 신고(신청)기간 경과후 1월 이내 : 3만원
- 신고(신청)기간 경과후 3월 이내 : 5만원
- 신고(신청)기간 경과후 6월 미만 : 7만원
- 신고(신청)기간 경과후 6월 이상 : 10만원

(나) 최고 또는 공고되지 아니한 자

- 신고(신청)기간 경과후 7일 이내 : 5천원
- 신고(신청)기간 경과후 1월 이내 : 2만원
- 신고(신청)기간 경과후 3월 이내 : 3만원
- 신고(신청)기간 경과후 6월 미만 : 4만원
- 신고(신청)기간 경과후 6월 이상 : 5만원